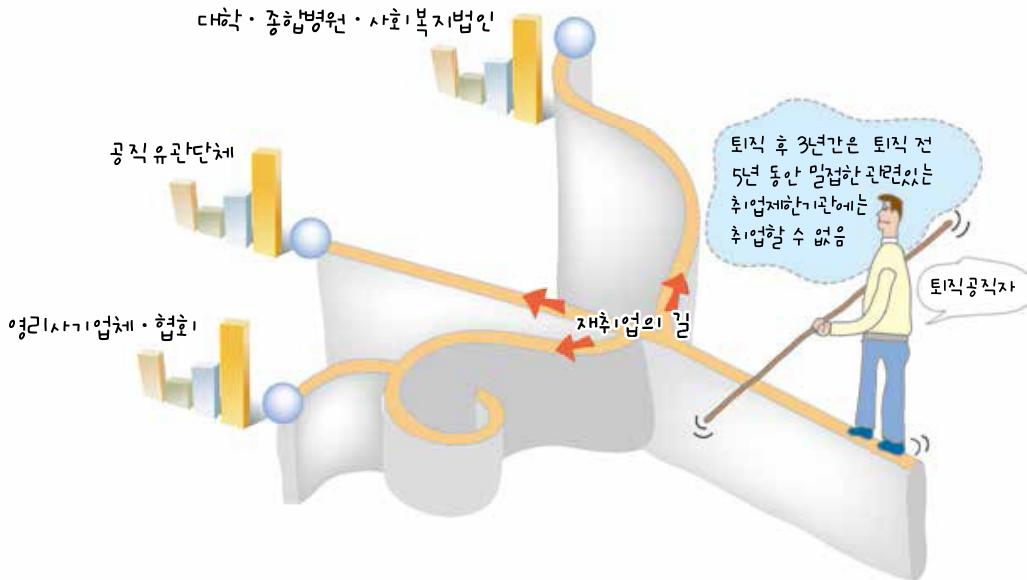


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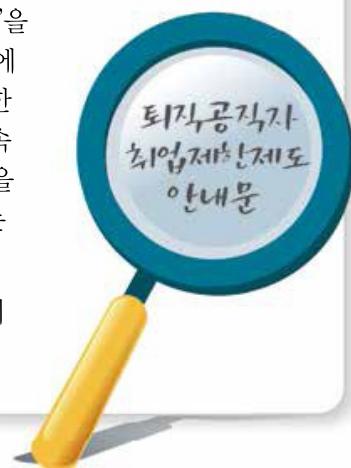


안녕하십니까?

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(15.3.30. 이전 퇴직자는 2년간)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.

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“취업제한여부 확인” 또는 “취업승인”을 받아야 하고,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,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,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따라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차례 / Contents



근거

공직자윤리법 제17조,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

※ 취업의 범위

'상법'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대상

퇴직 당시 재산등록의무자

-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, 회계부서·감사부서의 5~7급 공무원 등
- 공직유관단체의 상근 임원(기관장 포함)

제한내용

-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

※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(15. 3. 30일 이전 모든 퇴직자는 부서(과단위)업무)

- 3급이하 공무원 : 부서(과 단위)업무
- 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: 기관업무
(소속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) (법 제 17조 제 2항)

업무관련성 판단기준

-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공사·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(시행령 제32조제2항)

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'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' 또는 '취업승인 심사'에서 '취업가능' 또는 '취업승인'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

취업제한기관

| 구 분 | 지정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영리사기업체 |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|
| 협회·조합 | 취업당일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·단체 |
| 법무/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|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|
| 세무법인 |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|
| 사립대학 |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 * 다만 강의·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으로는 취업기능 하지만, 총장·학장·교무처장·학생처장·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이 있을 경우는 취업심사 필요 |
| 시장형공기업 |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|
| 공직유관단체 | 안전감독, 인허가 규제, 조달 업무 수행기관 |
| 종합병원 |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|
| 사회복지법인 |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|

※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

※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

- 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→ 분야별정보 → 법령정보
→ 훈령/예규/고시→취업제한기관 고시
- 대한민국전자관보(<http://gwanbo.korea.kr/main.jsp>)
* 취업제한 확인요청 : 취업예정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에 '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' 등의 자료를 제출

취업이력공시

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

대상 :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(2급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)

내용 :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지정 인터넷사이트에 매년 2월말 공시

※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('취업사실신고서' 제출)

우반시 제자

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취업제한 위반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

※ 병과 가능

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금지!】

근 거

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, 제18조의3,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

대상

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

※ 재산공개대상자, 2급 이상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

내 용

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
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**일정업무**
(법 제17조제2항 각 호) 취급 금지

위반 시
제재

5천만원 이하 과태료

업무내역서
제출 의무

- 제출시기 :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
- 제출내용 :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

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,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
취급 업무내역 포함

- 제출절차 :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
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
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)장은 검토의견서를
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
 ※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
- 위반 시 제재 :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【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!】

근 거

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

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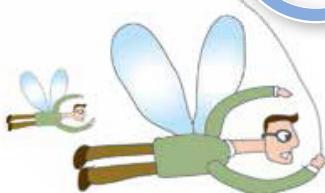
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내 용

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
(법 제17조제2항 각 호) 퇴직 후 취급 금지

우 반 시
제 제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본인 처리업무
취급금지!

03

부정한 청탁 · 알선
금지 등

【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· 알선행위 금지!】

근 거

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

대상

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내 용

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· 알선 금지

우 반 시
제 제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【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!】

근 거

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, 제22조제17호, 제23조

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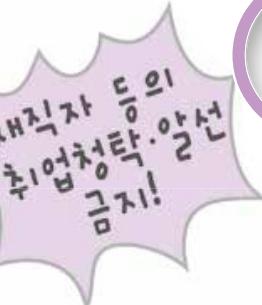
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내 용

재직자 :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
기 관 :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

우 반 시
제 제

재직자 : 징계의결 요구
기 관 : 시정권고



※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(법 제22조, 제23조, 제29조, 제30조)

| 구분 | 벌칙 징계 및 과태료 | 위반 내용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취업 제한 위반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|
| |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|
|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■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■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|
| 업무 취급 제한 위반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|
| |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 |
|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|
| 행위 제한 위반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 |
| |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·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■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|
| | 시정권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|